

「노동심판법」

[법률 평성16<2004>년제45호, 2011.5.23. 최종개정]

원문	번역문
<p>第一条 (목적)</p> <p>この法律は、労働契約の存否その他の労働関係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個々の労働者と事業主との間に生じた民事に関する紛争（以下「個別労働関係民事紛争」という。）に関し、裁判所において、裁判官及び労働関係に関する専門的な知識経験を有する者で組織する委員会が、当事者の申立てにより、事件を審理し、調停の成立による解決の見込みがある場合にはこれを試み、その解決に至らない場合には、労働審判（個別労働関係民事紛争について当事者間の権利関係を踏まえつつ事案の実情に即した解決をするために必要な審判をいう。以下同じ。）を行う手続（以下「労働審判手続」という。）を設けることによ</p>	<p>제1조(목적)</p> <p>이 법은 노동계약의 존부, 그 밖의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개의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에 발생한 민사에 관한 분쟁(이하 “개별노동관계 민사분쟁”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판소에서 재판관 및 노동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조정의 성립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도하고, 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심판(개별노동관계 민사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 관계에 입각하며 사안의 사정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심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절차(이하 “노동심판절차”라 한다)를 마련하여 분쟁</p>

り、紛争の実情に即した迅速、適正かつ実効的な解決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第二条 (管轄)

労働審判手続に係る事件（以下「労働審判事件」という。）

は、相手方の住所、居所、営業所若しくは事務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個別労働関係民事紛争が生じた労働者と事業主との間の労働関係に基づいて当該労働者が現に就業し若しくは最後に就業した当該事業主の事業所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又は当事者が合意で定める地方裁判所の管轄とする。

2 労働審判事件は、日本国内に相手方（法人その他の社団又は財団を除く。）の住所及び居所がないとき、又は住所及び居所が知れないときは、その最後の住所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3 労働審判事件は、相手方が法人その他の社団又は財団（外国の社団又は財団を除く。）である場合において、日本国内にその事務所若しくは営業所がないとき、又はその事務所若しくは

사정에 따른 신속, 적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노동심판절차 관련 사건(이하 “노동심판사건”이라 한다)은 상대방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재판소, 개별노동관계 민사분쟁이 발생한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노동관계에 기초하여 그 노동자가 현재 취업 중이거나 마지막으로 취업한 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방재판소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지방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② 노동심판사건은 일본 국내에 상대방(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을 제외한다)의 주소 및 거소가 없는 때 또는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③ 노동심판사건은 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외국 사단 또는 재단을 제외한다)인 경우 일본 국내에 그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때 또는 그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알

營業所の所在地が知れないときは、代表者その他の主たる業務担当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4 労働審判事件は、相手方が外国の社団又は財団である場合において、日本国内にその事務所又は営業所がないときは、日本における代表者その他の主たる業務担当者の住所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第三条 (移送)

裁判所は、労働審判事件の全部又は一部がその管轄に属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これを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

2 裁判所は、労働審判事件がその管轄に属する場合においても、事件を処理するために適当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当該労働審判事件の全部又は一部を他の管轄裁判所に移送することができる。

第四条 (代理人)

労働審判手続については、法令により裁判上の行為をすることができる代理人のほか、弁護士

수 없는 때에는 대표자, 그 밖의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④ 노동심판사건은 상대방이 외국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일본 국내에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일본에서의 대표자, 그 밖의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제3조(이송)

① 재판소는 노동심판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를 관할 재판소로 이송한다.

② 재판소는 노동심판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당 노동심판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 재판소에 이송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

① 노동심판절차는 법령에 따라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でなければ代理人となることができない。ただし、裁判所は、当事者の権利利益の保護及び労働審判手続の円滑な進行のために必要かつ相当と認めるときは、弁護士でない者を代理人とすること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前項ただし書の規定による許可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第五条 (労働審判手続の申立て)

当事者は、個別労働関係民事紛争の解決を図るため、裁判所に対し、労働審判手続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申立ては、申立書を裁判所に提出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項の申立書には、次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事者及び法定代理人
- 二 申立ての趣旨及び理由

第六条 (不適法な申立ての却下)

裁判所は、労働審判手続の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その申立てを却下

될 수 있다. 다만, 재판소는 당사자의 권리이익의 보호 및 노동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노동심판절차의 신청)

① 당사자는 개별노동관계 민사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재판소에 노동심판절차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서를 재판소에 제출하여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6조(부적법한 신청의 각하)

재판소는 노동심판절차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p>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七条 (労働審判委員会) 裁判所は、労働審判官一人及び労働審判員二人で組織する労働審判委員会で労働審判手続を行う。</p> <p>第八条 (労働審判官の指定) 労働審判官は、地方裁判所が当該地方裁判所の裁判官の中から指定する。</p> <p>第九条 (労働審判員) 労働審判員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労働審判委員会が行う労働審判手続に関与し、中立かつ公正な立場において、労働審判事件を処理するために必要な職務を行う。</p> <p>2 労働審判員は、労働関係に関する専門的な知識経験を有する者のうちから任命する。</p> <p>3 労働審判員は、非常勤とし、前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その任免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p> <p>4 労働審判員には、別に法律で</p>	<p>한다.</p> <p>제7조(노동심판위원회) 재판소는 노동심판관 1명 및 노동심판원 2명으로 구성하는 노동심판위원회에서 노동심판절차를 시행한다.</p> <p>제8조(노동심판관의 지정) 노동심판관은 지방재판소가 해당 지방재판소의 재판관 중에서 지정한다.</p> <p>제9조(노동심판원) ① 노동심판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심판위원회가 시행하는 노동심판절차에 관여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심판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노동심판원은 노동관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노동재판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그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④ 노동재판원에게는 따로 법률</p>
--	--

定めるところにより手当を支給し、並びに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額の旅費、日当及び宿泊料を支給する。

第十条 (労働審判員の指定)

労働審判委員会を組織する労働審判員は、労働審判事件ごとに、裁判所が指定する。

2 裁判所は、前項の規定により労働審判員を指定するに当たっては、労働審判員の有する知識経験その他の事情を総合的に勘案し、労働審判委員会における労働審判員の構成について適正を確保する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一条 (労働審判員の除斥)

労働審判員の除斥については、非訟事件手続法(平成二十三年法律第五十一号)第十一条並びに第十三条第二項、第四項、第八項及び第九項の規定(忌避に関する部分を除く。)を準用する。

2 労働審判員の除斥についての裁判は、労働審判員の所属する地方裁判所がする。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한다.

제10조(노동재판원의 지정)

① 노동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노동심판원은 노동심판사건마다 재판소가 지정한다.

② 재판소는 제1항에 따라 노동심판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심판원의 지식·경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노동심판위원회의 노동심판원 구성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심판원의 제척)

① 노동심판원의 제척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평성 23<2011>년 법률 제51호) 제11조 그리고 제13조제2항, 제4항, 제8항 및 제9항 규정(기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노동심판원의 제척에 대한 재판은 노동심판원이 소속된 지방재판소가 한다.

第十二条 (決議等)

労働審判委員会の決議は、過半数の意見による。

2 労働審判委員会の評議は、秘密とする。

第十三条 (労働審判手続の指揮)

労働審判手続は、労働審判官が指揮する。

第十四条 (労働審判手続の期日等)

労働審判官は、労働審判手続の期日を定めて、事件の関係人を呼び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2 裁判所書記官は、前項の期日について、その経過の要領を記録上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裁判所書記官は、労働審判官が命じた場合には、第一項の期日について、調書を作成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五条 (迅速な手続)

労働審判委員会は、速やかに、当事者の陳述を聴いて争点及び証拠の整理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労働審判手続においては、特

제12조(결의 등)

① 노동심판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

② 노동심판위원회의 평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13조(노동심판절차의 지휘)

노동심판절차는 노동심판관이 지휘한다.

제14조(노동심판절차의 기일 등)

① 노동심판관은 노동심판절차의 기일을 정하여 사건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판소 서기관은 제1항의 기일에 대하여 그 경과 요령을 기록상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재판소 서기관은 노동심판관이 명령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일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신속한 절차)

① 노동심판위원회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심판절차는 특별한 사정

<p>別の事情がある場合を除き、三回以内の期日において、審理を終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十六条 (手続の非公開) 労働審判手続は、公開しない。ただし、労働審判委員会は、相当と認める者の傍聴を許すことができる。</p> <p>第十七条 (証拠調べ等) 労働審判委員会は、職権で事実の調査をし、かつ、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必要と認める証拠調べ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証拠調べについては、民事訴訟の例による。</p> <p>第十八条 (調停が成立した場合の費用の負担) 各当事者は、調停が成立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支出した費用のうち調停条項中に費用の負担についての定めがないものを自ら負担するものとする。</p> <p>第十九条 (審理の終結) 労働審判委員会は、審理を終結するときは、労働審判手続の期日においてその旨を宣言しな</p>	<p>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회 이내의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p> <p>제16조(절차의 비공개) 노동심판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심판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7조(증거조사 등) ① 노동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p> <p>제18조(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비용 부담) 각 당사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지출한 비용 중 조정 조항 중에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스스로 부담한다.</p> <p>제19조(심리의 종결) 노동심판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할 때에는 노동심판절치의 기일에 그 취지를 선언하여야 한다.</p>
--	--

ればならない。

第二十条 (労働審判)

労働審判委員会は、審理の結果認められる当事者間の権利関係及び労働審判手続の経過を踏まえて、労働審判を行う。

2 労働審判においては、当事者間の権利関係を確認し、金銭の支払、物の引渡しその他の財産上の給付を命じ、その他個別労働関係民事紛争の解決をするために相当と認め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3 労働審判は、主文及び理由の要旨を記載した審判書を作成して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

4 前項の審判書は、当事者に送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労働審判の効力は、当事者に送達された時に生ずる。

5 前項の規定による審判書の送達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九号）第一編第五章第四節（第百四条及び第百十条から第百十三条までを除く。）の規定を準用する。

6 労働審判委員会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第三項の規定にか

제20조(노동심판)

① 노동심판위원회는 심리 결과 인정되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 및 노동심판절차의 경과에 입각하여 노동심판을 한다.

② 노동심판에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그 밖의 재산상의 급부를 명령하며, 그 밖의 개별노동관계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노동심판은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판서는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노동심판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판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평성8<1996>년 법률 제109호) 제1편제5장 제4절(제104조 및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를 제외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⑥ 노동심판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규

かわらず、審判書の作成に代えて、すべての当事者が出頭する労働審判手続の期日において労働審判の主文及び理由の要旨を口頭で告知する方法により、労働審判を行う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労働審判の効力は、告知された時に生ずる。

7 裁判所は、前項前段の規定により労働審判が行われたときは、裁判所書記官に、その主文及び理由の要旨を、調書に記載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一条 (異議の申立て等)

当事者は、労働審判に対し、前条第四項の規定による審判書の送達又は同条第六項の規定による労働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二週間の不変期間内に、裁判所に異議の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異議の申立てが不適法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決定で、これ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適法な異議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労働審判は、その効力を失う。

정에도 불구하고 심판서의 작성을 대신하여 모든 당사자가 출석하는 노동심판절차 기일에 노동심판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구두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노동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동심판의 효력은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⑦ 재판소는 제6항 전단에 따라 노동심판을 하는 때에는 재판소 서기관에게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 당사자는 노동심판에 대하여 제20조제4항의 심판서의 송달 또는 동조 제6항의 노동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간의 불변기간 내에 재판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노동심판은 그 효력을 잃는다.

4 適法な異議の申立てがないときは、労働審判は、裁判上の和解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5 前項の場合において、各当事者は、その支出した費用のうち労働審判に費用の負担についての定めがないものを自ら負担するものとする。

第二十二條 (訴え提起の擬制)

労働審判に対し適法な異議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労働審判手続の申立てに係る請求については、当該労働審判手続の申立ての時に、当該労働審判が行われた際に労働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た地方裁判所に訴えの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す。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については民事訴訟法第一編第二章第一節の規定により日本の裁判所が管轄権を有しないときは、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訴えを却下す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訴えの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る事件(同項後段の規定により却下するものとされる訴えに係るものを除く。)は、同項の地方裁判所の管轄に属する。

④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노동심판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지출한 비용 중 노동심판에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스스로 부담한다.

제22조(소제기의 의제)

① 노동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노동심판절차 신청에 관련된 청구는 해당 노동심판절차 신청 시 그 노동심판을 할 때에 노동심판사건이 계속된 지방재판소에 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편제2항제1절에 따라 일본 재판소에 관할권이 없는 때에는 그 소를 각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건(동항 후단에 따라 각하하는 소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은 동항의 지방재판소 관할에 속한다.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訴えの提起があったものとみなされたときは、民事訴訟法第百三十七条、第百三十八条及び第百五十八条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第五条第二項の申立書を訴状とみなす。

第二十三条 (労働審判の取消し)

第二十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審判書を送達すべき場合において、次に掲げる事由があるときは、裁判所は、決定で、労働審判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当事者の住所、居所その他送達をすべき場所が知れないこと。

二 第二十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

三 外国においてすべき送達について、第二十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八条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ず、又はこれによっても送達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こと。

四 第二十条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訴訟法第百八条の規定

③ 제1항에 따라 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 때에 「민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158조 규정 적용은 제5조제2항의 신청서를 소장으로 본다.

제23조(노동심판의 취소)

① 제20조제4항에 따라 심판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결정으로 노동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의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가 알려지지 아니할 것

2. 제2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송달하지 못할 것

3.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에 대하여 제2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르지 못하거나 이에 따라서도 송달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것

4. 제2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

により外国の管轄官庁に囑託を
發した後六月を経過してもその
送達を証する書面の送付がない
こと。

2 前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
より労働審判が取り消された場
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四条 (労働審判をしない場
合の労働審判事件の終了)**

労働審判委員会は、事案の性質
に照らし、労働審判手続を行う
ことが紛争の迅速かつ適正な解
決のために適當でないとする
ときは、労働審判事件を終了さ
せることができる。

2 第二十二條の規定は、前項の
規定により労働審判事件が終了
した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こ
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
「当該労働審判が行われた際に
労働審判事件が係属していた」
とあるのは、「労働審判事件が
終了した際に当該労働審判事件
が係属していた」と読み替える
ものとする。

**第二十四条の二 (労働審判手続の
申立ての取下げ)**

労働審判手続の申立ては、労働

라 외국 관할 관청에 촉탁을 받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이 송달되
지 아니할 것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규
정에 따라 노동심판이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조(노동심판을 하지 아니하
는 경우의 노동심판사건의 종료)**

① 노동심판위원회는 사안의 성
질에 비추어 노동심판절차를 시
행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심판
사건을 종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노동심판사건이 종료된 경
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에 동조 제1항 중 “해당 노동심
판을 한 때에 노동심판사건이
계속된”은 “노동심판사건이 종
료된 때에 해당 노동심판사건이
계속된”으로 대체한다.

**제24조의2(노동심판절차 신청의
취하)**

노동심판절차 신청은 노동심판

審判が確定するまで、その全部又は一部を取り下げ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五条 (費用の負担)

裁判所は、労働審判事件が終了した場合（第十八条及び第二十一条第五項に規定する場合を除く。）において、必要と認めるときは、申立てにより又は職権で、当該労働審判事件に関する手続の費用の負担を命ずる決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六条 (事件の記録の閲覧等)

当事者及び利害関係を疎明した第三者は、裁判所書記官に対し、労働審判事件の記録の閲覧若しくは謄写、その正本、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又は労働審判事件に関する事項の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2 民事訴訟法第九十一条第四項及び第五項並びに第九十二条の規定は、前項の記録について準用する。

第二十七条 (訴訟手続の中止)

이 확정되기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부담)

재판소는 노동심판사건이 종료된 경우(제18조 및 제21조제5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당 노동심판사건에 관한 절차의 비용 부담을 명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6조(사건 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소 서기관에게 노동심판사건 기록의 열람이나 복사, 등사(복사),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노동심판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91조제4항 및 제5항 그리고 제9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기록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7조(소송절차의 중지)

労働審判手続の申立てがあった事件について訴訟が係属するときは、受訴裁判所は、労働審判事件が終了するまで訴訟手続を中止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二十八条 (即時抗告)

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第六条、第二十一条第二項、第二十三条第一項及び第二十五条の規定による決定に対する即時抗告は、執行停止の効力を有する。

第二十九条 (非訟事件手続法及び民事調停法の準用)

特別の定めがある場合を除いて、労働審判事件に関しては、非訟事件手続法第二編の規定 (同法第十二条 (同法第十四条及び第十五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二十七条、第四十条、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及び第六十五条の規定を除く。) を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四十三条第四項中「第二項」とあるのは、「労働審判法 (平成十六年法律第四

노동심판절차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 수소(受訴)재판소는 노동심판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즉시항고)

① 제25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6조,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제29조(비송사건절차법 및 민사조정법의 준용)

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심판사건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규정[동법 제12조(동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7조, 제40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6조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43조제4항 중 “제2항”은 “노동심판법 (평성16<2004>년 법률 제45호) 제5조제3항”으로 대체한다.

十五号) 第五条第三項」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2 民事調停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二十二号) 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六条及び第三十六条の規定は、労働審判事件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法第十一条中「調停の」とあるのは「労働審判手続の」と、「調停委員会」とあるのは「労働審判委員会」と、「調停手続」とあるのは「労働審判手続」と、同法第十二条第一項中「調停委員会」とあるのは「労働審判委員会」と、「調停の」とあるのは「調停又は労働審判の」と、「調停前の措置」とあるのは「調停又は労働審判前の措置」と、同法第三十六条第一項中「前二条」とあるのは「労働審判法(平成十六年法律第四十五号) 第三十一条及び第三十二条」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第三十条(最高裁判所規則)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労働審判手続に関し必要な事項は、最高裁判所規則で定める。

② 「민사조정법」(소화 26<1951>년 법률 제222호) 제11조, 제12조, 제16조 및 제36조 규정은 노동심판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11조 중 “조정”은 “노동심판절차의”로, “조정위원회”는 “노동심판위원회”로, “조정절차”는 “노동심판절차”로, 동법 제12조제1항 중 “조정위원회”는 “노동심판위원회”로 “조정”은 “조정 또는 노동심판의”로 “조정 전 조치”는 “조정 또는 노동심판 전 조치”로, 동법 제36조 제1항 중 “제34조 및 제35조”는 “노동심판법(평성16<2004>년 법률 제45호) 제31조 및 제32조”로 대체한다.

제30조(최고재판소규칙)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노동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第三十一条 (不出頭に対する制裁)

労働審判官の呼出しを受けた事件の関係人が正当な理由がなく出頭しないときは、裁判所は、五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第三十二条 (措置違反に対する制裁)

当事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第二十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民事調停法第十二条の規定による措置に従わないときは、裁判所は、十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第三十三条 (評議の秘密を漏らす罪)

労働審判員又は労働審判員であっ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評議の経過又は労働審判官若しくは労働審判員の意見若しくはその多少の数を漏らしたとき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三十四条 (人の秘密を漏らす罪)

労働審判員又は労働審判員であ

제31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노동심판관의 출석 요청을 받은 사건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 재판소는 5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2조(조치위반에 대한 제재)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조정법」 제12조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재판소는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3조(평의의 비밀을 누설한 죄)

노동심판원 또는 이전에 노동심판원인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평의의 경과 또는 노동심판관이나 노동심판원의 의견이나 그 수를 누설한 때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죄)

노동심판원 또는 이전에 노동심

<p>った者が正当な理由がなくその職務上取り扱ったことについて知り得た人の秘密を漏らしたときは、一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p> <p>附 則</p>	<p>판원인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상 처리한 일에 대하여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부칙</p>
--	--